

◎환경부공고 제2025-58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